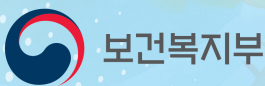


2017 모금단체 기부금 매뉴얼



보건복지부



NPO 한국NPO공동회의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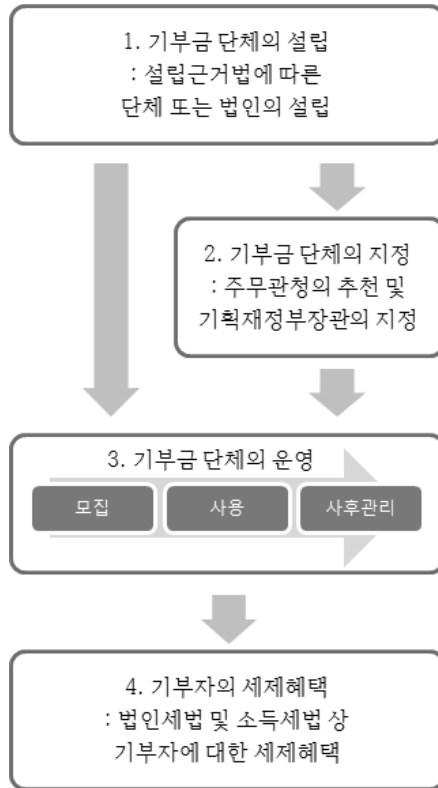
PART 01	기부금 단체의 설립	1
	1장 개요	3
	2장 민법 상 비영리법인의 설립	5
	3장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21
	4장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29
PART 02	기부금 단체의 지정	7
	1장 개요	39
	2장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기부금 단체 지정	41
	3장 비영리외국법인의 기부금 단체 지정	49
	4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기부금 단체 지정	53
	5장 법정기부금 단체의 지정	60
	6장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	68
PART 03	기부금 단체의 운영	17
	1장 기부금의 모집	75
	2장 기부금의 사용	86
	3장 기부금 사용 후 결과보고	99
PART 04	기부자의 세제혜택	33
	1장 법정기부금 단체와 지정기부금 단체의 종류	123
	2장 기부자의 세제혜택	130
	1.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등에 관한 서류	135
	2.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여부에 따라 공익법인이 공시해야하는 서식	144
	3. 외부전문가가 작성해야 할 세무확인서식	160

부 록

본 매뉴얼의 구성

기부란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금전이나 물품을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기부행위가 발생하여 그 혜택이 사회적 약자에게 귀속되는 과정에서 기부금을 모집하고 모집한 기부금을 적절한 곳에 사용하는 중간적 역할을 하는 것이 기부금 단체입니다.

기부금 단체가 설립되어 운영되는 일련의 흐름은 다음의 그림과 같습니다.



본 매뉴얼에서는 기부금 단체를 중심으로 각 단계별로 기부금 단체가 관련 법률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절차, 의무사항 등에 대하여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Part 1 기부금 단체의 설립, Part 2 기부금 단체의 지정, Part 3 기부금 단체의 운영, Part 4 기부자의 세제혜택의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단체의 설립

- 1장 개요
- 2장 민법 상 비영리법인의 설립
- 3장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 4장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PART

01

개요

기부란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금전이나 물품을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부는 기부자 스스로의 선택과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기부의 상대방, 기부의 시기, 기부금액 등에 있어 이를 제한하고 제약할 수 없으며, 실제로 이러한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부의 상대방에 따라 기부자는 법인세법 혹은 소득세법 상 세제혜택을 얻을 수 있으며, 본 매뉴얼에서는 기부자가 세제혜택을 얻을 수 있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을 “기부금 단체”라고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는 비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단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세법은 이러한 “기부금 단체”를 법정기부금단체와 지정기부금 단체로 구분하여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혹은 소득세법 상 “기부금 단체”의 종류는 다양하나 이를 크게 범주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② 공공기관
- ③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 ④ 각종 특별법(사립학교법, 의료법 등)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 ⑤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 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⑦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

다만, 위에 열거되어 있는 법인이나 단체들은 설립시부터 지정기부금이나 법정기부금 단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설립시에는 기부금 단체가 아니었다가 설립 후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기부금 단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은 설립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가 됩니다. 그러나 공익성격의 목적사업을 하더라도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설립시부터 기부금단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설립 후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비로소 지정기부금 단체가 됩니다.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받는 절차에 대해서는 Part2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①) 및 공공기관(②)의 경우 불특정한 개인 혹은 단체가 설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각종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법인(④)의 경우 설립의 절차나 방식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법인(③)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크게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법인, 2)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등록단체로 나누어 기부금 단체를 설립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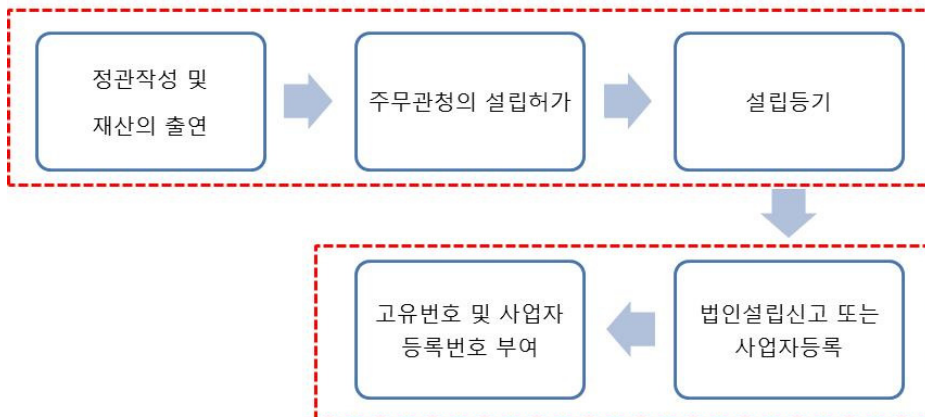
1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개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조).

2 법인 설립절차

민법에 따라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설립근거법에 따른 진행절차



법인세법에 따른 진행절차

(1) 설립행위(정관작성 및 재산의 출연)

재단법인인 비영리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이라고 하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받은 것이고 사단법인인 비영리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집합한 사람들의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에 있어서 설립행위는 곧 법인의 ‘정관 작성’을 일컫는 것이지만, 재단법인에 있어서 설립행위란 법인의 ‘정관 작성’과 함께 ‘재산 출연’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단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정관의 작성

정관이란 장차 성립될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근본규칙을 말하는 것으로, 민법에서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할 것을 요구합니다(민법 제40조 및 제43조).

정관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과 그렇지 않은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성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재사항	내용
필요적 기재사항	목적	목적은 영리 아닌 사업이어야 함
	명칭	명칭사용에 특별한 제한은 없고, ‘사단법인’ 혹은 ‘재단법인’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아도 무방
	사무소의 소재지	사무소가 수개일 때에는 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주된 사무소를 정하여야 함
	자산에 관한 규정	자산의 종류, 구성, 운용방법, 사원의 출자액, 회비에 관한 사항 등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이사의 수, 자격, 임기, 선임과 해임의 방법 등
	사원자격의 특실에 관한 규정	사원의 자격, 입사, 퇴사, 제명 등에 관한 사항(재단법인의 경우 사원이 없으므로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만 그 시기나 사유를 기재(재단법인의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임의적 기재사항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일단 정관에 기재되면 변경 시 정관변경의 절차 필요	

정관은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2조).

2) 재산의 출연

재단법인의 경우 법인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의 출연행위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민법 제43조).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설립된 때(설립등기를 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되고,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민법 제48조)

(2)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32조).

이 때 주무관청이란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주무관청의 확인은 ‘정부조직법’에 적시된 소관 사무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상 행정각부의 소관 사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무관청	소관사무
기획재정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
교육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

PART 1 _기부금 단체의 설립

주무관청	소관사무
외교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
통일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
법무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
국방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
행정안전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
산업통상자원부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
보건복지부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
환경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
여성가족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에 관한 사무
국토교통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
해양수산부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

정부조직법 상 행정각부의 소관사무에 따라 주무관청을 판단하였다면, 각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립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이 교육부인 경우라면,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PART 1 _기부금 단체의 설립

■ 교육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6.10.>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 육 부 장 관
교 육 관 감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p>※ 3.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p>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처리절차



신청인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상기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 시 다음의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입증서류와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임원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받은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합니다(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처분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해당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6.10>

(앞쪽)

제 호

법인설립허가증

1. 법인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가. 성명:
나. 생년월일:
다. 주소:
4. 사업 내용:
5. 허가 조건: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교 육 부 장 관
교 육 부 육 장 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m²]

(3) 설립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민법 제33조),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을 때로부터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49조 제1항).

이 때 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49조 제2항)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4) 법인 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신고서’에 ‘주주 등의 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 및 제111조).

각 신고서식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신고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설립신고서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3. 사업 목적
4. 설립일

PART 1 _기부금 단체의 설립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개정 2015.3.13.)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외국법인)	처리기간 3일 (보정기간은 불산입)
------	---	-------------------------------

귀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내용은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근거과세의 실현 및 사업자등록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서명 또는 인감(직인)날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인적사항

법 인 명(단체명)	승인법인고유번호 (폐업당시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인등록번호 -
사업장(단체)소재지	중 호
전 화 번 호 (사업장)	(휴대전화)

2. 법인현황

법인등록번호	-	자본금	천원	사업연도
법 인 성 격 (해당란에 O표)				
내 국 법 인			외 국 법 인	
영리 일반	영리 외투	비영리	지점(내국법인의 경우)	분할전사업자등록번호
국 가 자 방 지 처	법 인 으 로 는 단 체	승인법인	지점 (국내사업장)	연 락 사무소
기타	기타	기타	여	부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분할전사업자등록번호	분할연월일	국 적	투자비율
조합법인 해당 여부	사업자 단위 과세 여부	공 익 법 인	외국 · 외투 법인	국 적
여	부	여	부	여
해당여부	사업유형	주무부처명	출연자산여부	여
여	부	여	부	여

3. 외국법인 내용 및 관리책임자 (외국법인에 한함)

외 국 법 인 내 용				
본점	상 호	대표자	설 치 년 월 일	소 재 지
성 명 (상 호)	주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	

4. 사업장현황

사 업 의 종 류						사업(수익사업) 개 시 일
주업태	주 종 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 종 목	부업종코드	년 월 일
사이버물 명칭	사이버물 도메인					
사업장 구분 및 면적		도면첨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자가	타가	여	부	성 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인(법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임 대 차 계 약 기 간			(전세)보증금		월 세(부가세 포함)	
20 ~ 20			원		원	
개 별 소 비 세		주 류 면 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인 · 허가 사업 여부
제조	판매	장 소	유 흥	면 허 번 호	면 허 신 청	여
				여	부	신고
						등록
						인 · 허가
						기타
설립등기일 현재 기본 재무상황 등						
자 산 계	유 동 자 산	고 정 자 산	부 채 계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종 업 원 수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명
전자우편주소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5.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시 유의사항(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 사업자등록 상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과세자료에 대하여 소명 등을 하여야 하며, 부과된 세금의 체납시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내역 금융회사 통보, 여권발급제한,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 내국법인은 주주(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 주주(사원)명부는 사업자등록신청 및 법인세 신고시 제출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되므로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주주명의 대여시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다.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무단 이전**하여 실시사업여부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 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금기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결재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성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신청 구분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만 신청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신청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input type="checkbox"/>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신청 (확정일자 번호: _____)			

신청서에 적은 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고, 「법인세법」 제109조·제1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부터 제154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3항제11호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법인설립 및 국내사업장설치 신고와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위대리인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1부(외국법인만 해당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4.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5.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만 해당합니다) 또는 설립허가증사본(비영리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6.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7.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형상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8.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9.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10. 사업지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법인사업자용)(사업지단위과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

작성방법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작성 예) ○○동 ○○○○번지 ○○호 ○○상가(빌딩) ○○동 ○○층 ○○○○호

PART 1_기부금 단체의 설립

- 주주 등의 명세서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 <개정 2012.2.28>

사 업 연 도	. . . ~ . . .	주주등의 명세서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①성명 (법인명)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④전화번호 (휴대전화)	지분 또는 출자관계				⑨ 대주주 와의 관계	비고
③주소			⑤주식수	⑥주당 액면가액	⑦금액	⑧지분율 (%)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사업자등록 서류

구분	첨부서류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금(이하 "금지금"이라 한다) 도매 및 소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 유통장소에서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6.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이하 "공된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이 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業態)·종목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7.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과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8.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5) 고유번호 부여

국제청장은 내국법인이 법인 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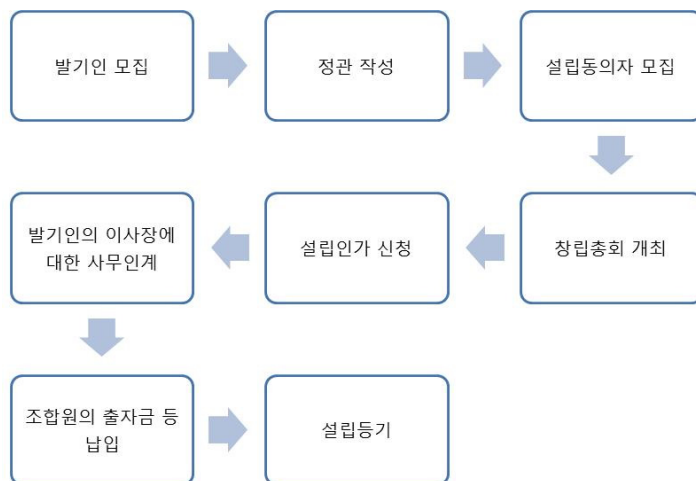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1 사회적협동조합의 정의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중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2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은 다음의 단계를 걸쳐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 설립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기인 모집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1항).

발기인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0조, 제24조 제2항 제5호, 제91조).

(2) 정관 작성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 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할 사항

(3) 설립동의자 모집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설립동의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때 설립동의자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 가운데 둘 이상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하여 구성되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4)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에 앞서 다음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1.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2. 조합원의 자격요건
3.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설립동의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2항).

창립총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1. 정관
2. 사업계획과 예산
3. 임원의 선출
4.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5) 설립인가 신청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1항).

설립인가 신청 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설립인가 신청서’ 및 ‘설립인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설립인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
5. 해당 연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해당 연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발기인 및 법 제85조제2항 및 제114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법 제101조제1항 및 제115조제3항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함) 사본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기획재정부장관은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3항).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인가번호 제 호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 립 인 가 증

조 합 명:
(연 합 회 명)

이사장(회장) 성명:

주 소: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1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기획재정부장관
중앙행정기관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종) 120g/㎡]

(6) 발기인의 이사장에 대한 사무인계

발기인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7조 제1항).

(7) 조합원의 출자금 납입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7조 제2항).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총 출자좌수의 30/100 이내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제1항, 제2항 및 제91조).

출자의 형태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현물 출자도 할 수 있으며, 현물출자자는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7조 제3항).

(8) 설립등기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제1항 및 제2항).

1. 협동조합의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

또한,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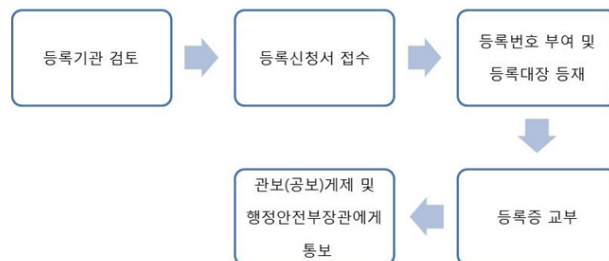
1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의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2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은 다음의 단계를 걸쳐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 등록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기관 검토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1항).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신청을 하는 것이며, 그 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2) 등록신청서 접수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신청 시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등록신청서’ 및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8. 29.>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변경 시 10일)
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대표자와의 관계	연락처
	주소	
단체	명칭	연락처
	소재지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대표자 연락처
	주된 사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p><등록 신청 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칙 1부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부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회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작성되어야 하며, 회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작성 후 "외 ○○인"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1부 ※ 법인의 경우에는 제출서류 중 회원명부만 제출 5.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p><등록변경 신청 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체의 명칭 변경 또는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및 회칙 각 1부 2. 대표자·관리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회칙 1부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 1부
5.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3) 등록번호 부여 및 등록대장 등재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한 등록요건을 검토하고 다음의 등록대장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4) 등록증 교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다음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8. 29.>

제 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1. 단 체 명:
2. 소 재 지:
3. 대 표 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4. 주 된 사 업:
5. 최초등록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5) 관보(공보) 게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

등록증을 교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보 또는 시·도의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기부금 단체의 지정

- 1장 개요
- 2장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기부금 단체 지정
- 3장 비영리외국법인의 기부금 단체 지정
- 4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기부금 단체 지정
- 5장 법정기부금 단체의 지정
- 6장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

PART

02

개요

Part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부금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단체의 설립근거법에 따른 일정한 설립절차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설립된 단체 또는 법인이 모두 설립시부터 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설립시부터 기부금단체가 아닌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여 주무관청의 추천을 통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단체에 기부한 기부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시부터 기부금단체가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추천 →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의 과정을 거쳐야만 기부자가 세제혜택을 얻을 수 있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인 기부금 단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통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 기부금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금 구분	단체	관련 조문
지정기부금 단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영리외국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법정기부금 단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2 제3항

PART 2_기부금 단체의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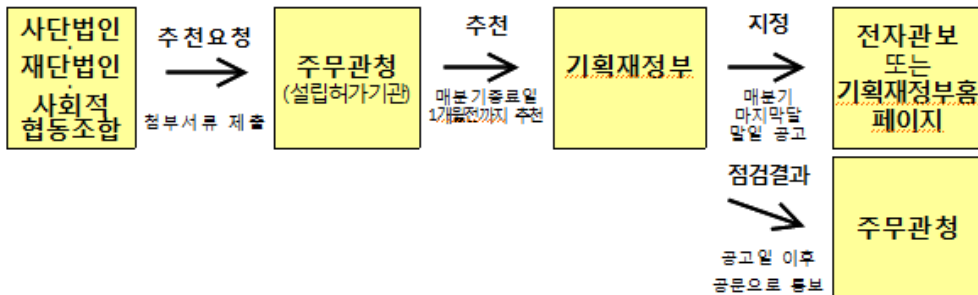
기부금 구분	단체	관련 조문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2 제4항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2 제5항

이하에서는 상기의 주무관청의 추천을 통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이 요구되는 단체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사후관리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기부금 단체 지정

1 지정절차의 개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 기부금 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추천을 통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이 필요하며, 해당 절차의 업무흐름은 다음의 그림과 같습니다.



2 기부금 단체의 지정을 받기 위한 요건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 기부금 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해당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 (1)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되어야 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시·도의 관할 구역을 말하되,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 (2) 해산을 하면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4)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 (5)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3 주무관청의 추천 시 제출서류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다음의 서류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 (1) 주무관청의 장의 관인이 날인된 기부금단체 추천서

PART 2 _기부금 단체의 지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 <개정 2013.2.23>

기부금단체 추천서

1. 추천대상단체의 추천구분

[] 전문모금기관 [] 한국학교 [] 공공기관등 [] 국내지정기부금단체 [] 해외지정기부금단체

2. 추천대상단체의 인적사항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④ 사업개시일
⑤ 소재지	⑥ 전화번호
⑦ 사업내용 (별지작성 가능)	

3. 기부금관련

가. 기부금 모집의 목적
(별지 작성가능)

나.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단위 : 억원)

년		년		년	
년	년	합	계		

다. 기부금의 관리방법 (홈페이지 주소 :)

위 단체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부금단체로서 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 또는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의 장)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작성방법

※ "1.추천대상단체의 추천구분"란 작성 방법

- (1) 전문모금기관 :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2) 한국학교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 (3) 공공기관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추천대상 단체가 아님)과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4) 국내지정기부금단체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 (5) 해외지정기부금단체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인·단체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2) 법인설립허가서(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경우로 한정)
- (4) 정관
- (5) 최근 2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다만, 제출일 현재 법인 등의 설립기간이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주무관청에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
- (6)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부금 모집을 통한 사업계획서

4 추천방법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관련서류를 갖추어 주무관청에 기부금 단체의 추천을 요청하고, 주무관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매분기 마지막달의 1개월 전까지 기부금단체추천서에 기타 제출서류를 포함하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로 제출함으로써 기부금 단체의 추천이 이루어집니다.

5 기부금단체 지정기간

기획재정부가 지정신청을 한 단체를 기부금 단체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며, 지정기간이 경과한 후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

6 기부금 단체 지정 후 사후관리 의무

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법인은 지정기간 동안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 및 제6항).

PART 2_기부금 단체의 지정

- (1) 정관 및 실제운영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제1항제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할 것)
 - (2) 정관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
 -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각각 공개할 것
 - (4)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 (5)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 법인은 상기 의무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기한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지정연도	보고기한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의무이행 여부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의무이행 여부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의무이행 여부	지정일부터 6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주무관청은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보고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보고 사실을 상기의 보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3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서식] <개정 2014.7.22>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1. 단체 인적사항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기부금단체 지정일	
⑤ 소재지	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의무이행 여부

⑦ 의무	⑧ 의무이행 여부	⑨ 점검결과
가. 정관 및 실제운영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할 것)		
나. 정관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		
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각각 공개할 것		
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마.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2012. 2. 2. 이후 지정된 단체의 경우 해당)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귀하

위 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인]

국세청장 귀하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가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 ⑧ 의무이행 여부란은 지정기부금단체가 작성하며, ⑨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7 기부금 단체 지정취소

국세청장은 기부금 단체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8항).

- (1) 해당 법인이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 (2)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경우
- (3) “6. 기부금 단체 지정 후 사후관리 의무”에서 언급된 각종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4) 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주무관청의 보고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5)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6)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7) 법인이 해산한 경우

비영리외국법인의 기부금 단체 지정

비영리외국법인이 기부금 단체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 사후관리 의무 등은 앞서 살펴본 2장의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기부금 단체 지정”과 거의 유사합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기부금 단체 지정절차 중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기부금 단체 지정”과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부금 단체의 지정을 받기 위한 요건

비영리외국법인이 기부금 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해당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

- (1) 비영리외국법인으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 것
- (2) 2장의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기부금 단체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2 주무관청의 추천 시 제출서류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다음의 서류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PART 2_기부금 단체의 지정

이 때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2장의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제출하는 서류’에 다음의 서류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 (1) 해당 법인·단체가 설립된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신청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5서식] <개정 2013.2.23>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대상단체	①법인(단체)명	②대표자
	③해외본사 소재지	④국내 사무소 소재지(국내에 있는 경우만 작성)
인적사항	⑤사업개시일	⑥전화번호 (해외) (국내)

사업내용 (별지작성가능)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신청단체의 직인)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신청안내

※ 신청자는 이 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신청서를 받은 주무관청은 이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첨부서류	① 해당 법인·단체가 설립된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정관(해당 법인·단체의 설립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최근 2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④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 기타사항

앞서 언급한 기부금 단체 지정요건, 주무관청 추천 시 제출서류 외의 항목에 대하여 2장의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기부금 단체 지정절차’와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차이점
추천방법	차이 없음
기부금단체 지정기간	차이 없음
기부금 단체 지정 후 사후관리 의무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동일하나, 비영리외국법인은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주무관청에의 보고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
기부금 단체 지정취소	비영리외국법인의 지정취소 사유는 기부금 단체 지정 후 사후관리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기부금 단체 지정

1 지정절차의 개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기부금 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을 통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이 필요하며, 해당 절차의 업무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리절차

비영리민간단체(신청) → 행정자치부(추천) → 기획재정부(지정)

(2) 신청기간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기부금 단체의 지정 및 재지정은 매 반기별로 이루어집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 2 제4항). 따라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신청, 추천, 지정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반기 : 접수(3.1.~3.31.), 검토 및 추천(4~5월), 지정발표(6.30.)
- 하반기 : 접수(9.1.~9.30.), 검토 및 추천(10~11월), 지정발표(12.31.)

2 기부금 단체의 지정을 받기 위한 요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기부금 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해당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 (1)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2)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을 기준으로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 (3)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4)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 (5)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
- (6)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7)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3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 시 제출서류

행정자치부장관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하는 때에는 단체의 사업목적, 기부금의 용도가 포함된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서’를 매 반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 2 제1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4서식] <개정 2014.11.19.>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서

1. 추천대상단체 인적사항			
① 단 체 명		②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번 호	
③ 대 표 자		④ 단 체 설 립 일	
⑤ 소 재 지		⑥ 대 표 연 락 처 (주소·전화·휴대폰)	
⑦ 사 업 목 적			
2. 기부금의 용도			

위 단체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⑦ 사업목적란은 추천하는 단체가 경영하는 사업목적을 적으며, 필요한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2. 기부금의 용도란은 기부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사용하려는 용도를 적으며, 사회복지·문화·교육·종교·자선 등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 기부금단체 지정기간

기획재정부가 지정신청을 한 단체를 기부금 단체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5년간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5 기부금 단체 지정 후 사후이행 의무

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행정자치부장관은 전체 수입 중 개인의 회비 및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및 기부금의 총액 및 건수와 그 사용명세서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 및 제4항).

또한, 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다음의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PART 2 _기부금 단체의 지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3.13.>

수입 명세서

귀속연도				
1. 기부금 대상 민간 단체 인적 사항	① 단 체 명		② 대 표 자	
	③ 고 유 번 호		④ 전 화 번 호	
	⑤ 비 영 리 민 간 단 체 등 록 번 호		⑥ 핸 드 폰	
	⑦ 지 정 일		⑧ 소 재 지	

2. 수입명세

(단위 : 원)

⑨ 회 비		⑩ 후 원 금		⑪ 보조금		⑫ 기타수입 (수익사업 등)	⑬ 이월금	⑭ 차입금	⑮ 총 계
개인	법인 등	개인	법인 등	국가· 지자체	기타				

3. 수입(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수입은 제외)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

4. 통장 보유 현황

⑯ 구 분					
⑰ 계좌번호					
⑱ 계좌명의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 따라 수입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인)

국세청장 귀하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⑦ 지정일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날을 적습니다.
- 수입(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수입은 제외)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란: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⑮ 총계금액에서 ⑪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⑬ 이월금 ⑭ 차입금 수입을 뺀 금액 중 개인으로부터 받은 회비·후원금 등의 비율을 적습니다.
- ⑯ 구분란: 금융회사 등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6 기부금 단체 지정취소

국세청장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 대상민간단체에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 지정이 취소된 단체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재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6항).

- (1)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 목적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행정자치부장관을 포함)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되어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
- (4) 앞서 “2. 기부금 단체의 지정을 받기 위한 요건”에서 언급한 요건을 위반하거나 실제 경영하는 사업이 해당 요건과 다른 경우
- (5)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해산한 경우

법정기부금 단체의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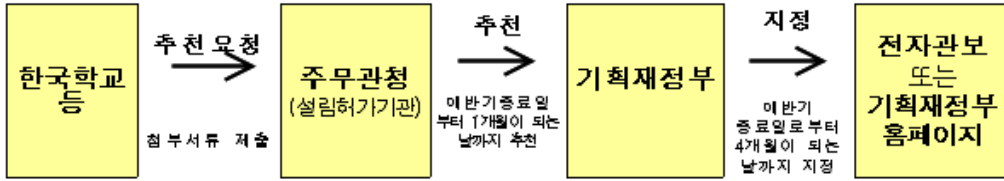
법인세법에서는 주무관청의 추천을 통해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만 법정기부금 단체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단체는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2 제3항)
-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2 제4항)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2 제5항)

위의 법인 및 단체가 법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는 절차, 요건, 이행의무 등이 서로 유사하므로 이하에서는 세 가지 단체 또는 법인의 법정기부금 단체 지정과 관련된 사항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비교하여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정절차의 개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이 기부금 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추천을 통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이 필요하며, 해당 절차의 업무흐름은 다음의 그림과 같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2 제6항).



2 지정기간, 지정요건, 지정취소 등 법정기부금 단체 지정과 관련된 사항

위의 단체 또는 법인이 주무관청의 추천을 통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건, 제출해야하는 서류, 지정취소 사유 등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지정요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결산서류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5.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총 지출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기부금의 모집·배분 및 법인의 관리·운영에 사용한 비용이 기부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설립 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3.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정부지원금 및 기부금 합계액이 연간 총 수입금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4.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것

PART 2 _기부금 단체의 지정

구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수입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6.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개별 법인별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전체 배분지출액의 100분의 25 이하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출연자 및 출연자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없을 것 7.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제출서류	1. 기부금단체 추천서 2. 해당 학교가 제출한 한국학교의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서 3.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설립승인서 및 운영승인서 4. 최근 5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5.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1. 기부금단체 추천서 2. 법인설립허가서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정관 5.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6. 최근 5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7. 총 지출금액 계산서 8. 최근 5년간의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전용계좌개설 신고 사실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사실 증명	1. 기부금단체 추천서 2. 법인설립허가서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정관 5.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6. 최근 5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7. 총 수입금액 계산서
지정기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2 제7항)		
지정기간 동안의 이행의무	1.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2. 해당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3.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구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주무관청에 보고의무	보고의무 없음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지정기간 동안의 의무 이행 여부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함	
지정취소 사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2.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 지정요건 및 지정기간 동안의 이행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주무관청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4.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5. 해산한 경우 		

위의 단체 또는 법인이 주무관청에 법정기부금 단체의 추천을 요청할 경우 제출해야하는 서식 중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부금단체 추천서’, ‘한국학교의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서’, ‘총 지출금액 계산서’, ‘총 수입금액 계산서’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 <개정 2013.2.23>

기부금단체 추천서

1. 추천대상단체의 추천구분

[] 전문모금기관 [] 한국학교 [] 공공기관등 [] 국내지정기부금단체 [] 해외지정기부금단체

2. 추천대상단체의 인적사항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④ 사업개시일
⑤ 소재지	⑥ 전화번호
⑦ 사업내용 (별지작성 가능)	

3. 기부금관련

가. 기부금 모집의 목적
(별지 작성가능)

나.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단위 : 억원)

년	년	년	년
년	년	합	계

다. 기부금의 관리방법 (홈페이지 주소 :)

위 단체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부금단체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 또는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의 장)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작성방법

※ "1.추천대상단체의 추천구분"란 작성 방법

- (1) 전문모금기관 :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2) 한국학교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 (3) 공공기관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추천대상단체가 아님)과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4) 국내지정기부금단체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 (5) 해외지정기부금단체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인·단체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6서식] <개정 2012.2.28>

한국학교의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매년 7.31까지 매년 9.30까지
------	------	------	------------------------

신청대상 단체 인적사항	①법인(단체)명	②한국학교 운영승인일자	
	③대표자	④사업개시일	
	⑤소재지	⑥전화번호	(해외) (국내)

사업내용 (별지작성가능)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제8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 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신청단체의 직인)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①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설립승인서 및 운영승인서 ② 최근 5년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설립한 사업연도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③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음
------	---	-----------

신청안내

※ 신청자는 이 신청서를 주무관청인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고, 신청서를 받은 주무관청은 이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8서식] <개정 2012.2.28>

총 지출금액 계산서

(전문모금기관의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검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① 법인명	② 법인 설립일
③ 사업연도	④ 법정기부금단체 신청일

1.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의 적정 여부

구분	법정기부금단체 신청일 직전					평균
	1사업연도	2사업연도	3사업연도	4사업연도	5사업연도	
총 지출금액	⑤ 포괄손익계산서 차변 합계액					
	⑥ 현금흐름 무관 지출액					
	⑦ 차가감계 (=⑤-⑥)					
기부금 배분지출액	⑧ 개인 직접 지원액					
	⑨ 비영리법인 지출액					
	⑩ 출연 비영리법인 지출액					
	⑪ 개인 과다 직접 지원액					
	⑫ 차가감계 (=⑧+⑨-⑩-⑪)					
적정 여부	⑬(=⑦의 평균란 금액 × 80%)	⑭(=⑫의 평균란 금액)			“⑬ ≤ ⑭” 충족여부 []충족 []불충족	

2. 기부금 모집 · 배분 및 법인 관리 · 운영에 사용한 금액의 적정 여부

구분	법정기부금단체 신청일 직전					평균
	1사업연도	2사업연도	3사업연도	4사업연도	5사업연도	
기부금 수입 금액	⑮ 개인기부금					
	⑯ 법인기부금					
	⑰ 합계 (=⑮+⑯)					
기부금 모집 · 배분 등 사용액	⑱ 기부금 모집 · 배분 사용액					
	⑲ 법인 관리 · 운영 사용액					
	⑳ 합계 (=⑱+⑲)					
적정 여부	㉑(=⑰의 평균란 금액 × 10%)	㉒(=㉑의 평균란 금액)			“㉑ ≥ ㉒” 충족여부 []충족 []불충족	

3. 개별 법인별 평균 기부금 배분지출액의 적정 여부

개별 법인(또는 단체)		기부금 배분지출액		
㉓ 법인(또는 단체)명	㉔ 사업자등록번호	㉕ 총액	㉖ 평균	㉗ 비율(= ㉖/⑭)
				%
				%
				%
				%
“개별 법인별 평균 배분 비율 ㉗ ≤ 25%” 충족여부			[]충족 []불충족	

4. 기부금을 배분받은 법인의 적정 여부

㉘ 해당 전문모금기관의 출연자 등에게 배분한 기부금 배분지출액 유무	[]있음 []없음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9서식] <개정 2011.7.29>

총 수입금액 계산서

(공공기관 등의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검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① 단체명	② 단체 설립일
③ 사업연도	④ 법정기부금단체 신청일

구분		법정기부금단체 신청일 직전					평균
		1사업연도	2사업연도	3사업연도	4사업연도	5사업연도	
⑤ 포괄손익계산서 대변 합계액							
⑥ 정부지원금 중 재무상태표 계상액							
⑦ 현금흐름 무관 수입액							
⑧ 비수익사업 수입액							
⑨ 차가감 계 (=⑤+⑥-⑦-⑧)							

구분		법정기부금단체 신청일 직전					평균
		1사업연도	2사업연도	3사업연도	4사업연도	5사업연도	
정부지원금	⑩ 국가·지자체 이전 수입액						
	⑪ 민간 등 이전 수입액						
	⑫ 합 계 (=⑩+⑪)						
기부금 수입	⑬ 개인기부금						
	⑭ 법인기부금						
	⑮ 합 계 (=⑬+⑭)						
⑯ 합 계 (=⑫+⑮)							

3. 공공기관 등의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충족 여부		
⑰ (=⑨의 평균란의 금액)	⑱ (=⑯의 평균란의 금액 × 3)	“⑰ ≤ ⑱” 충족 여부
		[] 충족 [] 불충족

작성방법

1. “1. 총 수입금액”란 작성 방법
 - 가. ⑤ 포괄손익계산서 대변 합계액: 발생주의에 기초한 결산기준 포괄손익계산서의 대변에 계상된 금액(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나. ⑥ 정부지원금 중 재무상태표 계상액: 정부지원금 중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다. ⑦ 현금흐름 무관 수입액: 대손충당금 등 평가성 총당금의 환입액,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등 세무상 목적의 준비금 환입액 등 현재와 미래의 현금흐름과 무관한 수입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라. ⑧ 비수익사업 수입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마. ⑨ 차가감 계: “⑤+⑥-⑦-⑧”의 금액을 적습니다.

2. “2. 정부지원금 및 기부금 합계액”란 작성 방법
 - 가. ⑩ 국가·지자체 이전 수입액: 출연금, 보조금 등 정부로부터 이전받은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나. ⑪ 민간 등 이전 수입액: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등 법령상 강제규정에 따라 민간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

앞선 장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은 단체 또는 법인은 공통적으로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 제3호 및 제36조의2 제8항 제1호).

이하에서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해야하는 단체 및 법인이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다음의 서식에 따라 공개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 (개정 2014.3.14)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1. 기본사항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기부단체 구분	
⑤ 전자우편주소		⑥ 사업연도	
⑦ 전화번호		⑧ 기부금단체 지정일	
⑨ 소재지			

2.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단위: 원)

⑩ 월별	⑪ 수입	⑫ 지출	⑬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8월			
1월				9월			
2월				10월			
3월				11월			
4월				12월			
5월				합계			
6월				차기이월	-	-	
7월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⑭ 지출월	⑮ 지급목적	⑯ 지급건수	⑰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⑱ 금액
⑲ 연도별	⑳ 지급목적	㉑ 수혜인원	㉒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㉓ 금액
합계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단위: 원)

㉔ 지출월	㉕ 국가명	㉖ 지급목적	㉗ 지급건수	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㉙ 금액
㉚ 연도별	㉛ 국가명	㉜ 지급목적	㉝ 수혜인원	㉞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㉟ 금액
합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9항 또는 제36조의2제8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제출합니다.

제출인: _____ 년 월 일
(단체의 직인) [인]

국세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는 방법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는 방법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1)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
- (2) 우측 상단의 ‘공익법인공시’ 클릭



PART 2_기부금 단체의 지정

(5) 월별 기부금 수입액 및 기부금 지출액 입력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

기부금의 수입, 지출 명세

(단위: 원)

(10) 월별	(11) 수입	(12) 지출	(13)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 이월	-	-		2015년 08월			
2015년 01월				2015년 09월			
2015년 02월				2015년 10월			
2015년 03월				2015년 11월			
2015년 04월				2015년 12월			
2015년 05월				합계			
2015년 06월				차기 이월	-	-	
2015년 07월							

기부금의 지출 명세

국내사업 기부금 지출 명세서

- 국내사업이 있는 단체는 지출내역을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국내사업 기부금 지출 명세서
작성하기

국외사업 기부금 지출 명세서

- 국외사업이 있는 단체는 국가별 지출내역을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국외사업 기부금 지출 명세서
작성하기

이전

신고서 작성완료

(6) 모든 정보 입력 후 '신고서 작성완료' 클릭

기부금 단체의 운영

- 1장 기부금의 모집
- 2장 기부금의 사용
- 3장 기부금 사용 후 결과보고

PART

03

기부금의 모집

기부금 단체가 민법 등의 절차에 따라 설립근거법에 따라 설립되고,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의 추천을 통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의 지정을 받았다면, 비로소 기부자가 기부에 따른 세제혜택을 얻을 수 있는 ‘기부금 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부금 단체는 기부금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모집’하고, 모집된 기부금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따른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운영되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기부금 단체의 운영 시 기부금 단체가 지켜야 할 규정과 절차,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 등에 대하여 크게 1) 기부금의 모집, 2) 기부금의 사용, 3) 기부금의 사후관리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단체가 기부금을 모집할 때 적용받는 법률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입니다. 따라서, 기부금을 불특정 다수로부터 모집하고자 하는 기부금 단체는 해당 법률의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1 기부금품법 상 모집

기부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기부금품법 제2조 제2호).

2 기부금품법의 적용범위

기부금품법은 기부금 단체가 기부금 모집을 통해 기부받은 기부금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부자에게 기부권유 등의 모집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기부자가 자발적으로 금품을 출연하는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경우에는 모집등록 없이 모금을 할 수 있으므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에 따라 기부받은 기부금은 기부금품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기부금의 모집이 가능한 단체나 사업의 범위

기부금품법 제5조 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는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품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기부금 모집이 가능합니다.

-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의 구휼사업
-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4 민법상 비영리법인기부금의 모집등록의 개요

기부금 모집을 위해서는 기부금 모집등록이라는 사전절차가 필요합니다. 기부금 모집금액이 1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모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기부금 모집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기부금품법 시행령 제2조).

등록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기부금품법 시행령 제3조).

- ①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 신청서(기부금품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②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계획서
- ③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 및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금품의 사용계획서
- ④ 모집 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 ⑤ 모집자가 법인·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 당헌 또는 회칙·규약과 정당등록증 사본 또는 단체신고증 등 해당 단체가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⑥ 기부금품 모집목적이 기부금품법 제4조 제2항 아목의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모집된 금품으로 하려는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추천서
- ⑦ 기부금품 접수를 위한 금융회사 등의 예금통장 사본

상기의 제출 서류 중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 신청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신청서				
모집자가 개인인 경우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연 락 처	
모집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⑤ 명 칭		⑥ 연 락 처	
	⑦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⑧ 대표자 성명		⑨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⑩ 대표자 주소		⑪ 대 표 자 연 락 처	
<p>「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p>〈 등록(변경)신청 시 첨부서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계획서 2.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금품의 사용계획 3. 모집 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4. 모집자가 법인·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 당헌 또는 회칙·규약과 정당등록증 사본 또는 단체신고증 등 해당 단체가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5. 법 제4조제2항제4호아목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려는 자의 경우 모집된 금품으로 하려는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추천서 6. 기부금품 접수를 위한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7. 그 밖의 사항 				<p>수수료</p> <p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없 음</p>

기부금품법에 따른 모집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부금 모집등록을 하고 기부금을 모집한자는 등록청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당하여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해야 할 수 있으며(기부금품법 제10조 제1항 제1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오니 관련 업무 시 주의하여야 합니다(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제1호).

5 모집활동 시 모집자의 이행의무

모집자는 ‘기부모집금출납부’(기부금품법 시행령 별지5호서식)와 ‘기부모집물품출납부’(기부금품법 시행령 별지6호서식)를 모집장소에 갖추고 기부금의 접수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기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기부금품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만약, 기부금의 접수사실을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부모집금출납부’, ‘기부모집물품출납부’ 및 ‘기부금영수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기부모집금 출납부

연월일	수 입			지 출			잔 고
	기부자 주소·성명	금 액	누 계	지출내용	금 액	누 계	

PART 3_기부금 단체의 운영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서식] <개정 2013.2.23>

일련번호	
------	--

기부금 영수증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부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② 기부금 단체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소재지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③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④ 기부내용

유형	코드	구분	연월일	내용			금액
				품명	수량	단가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② 기부금 단체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예,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 ③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기부금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④ 기부내용의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기부금 구분	유형	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	2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지정	4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종교단체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우리사주	42
필요경비(손금) 및 소득공제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공제제외	50

- ④ 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6 기부금의 모집 시 주의사항

기부금의 모집은 기본적으로 모집등록 시 등록청에 제출한 모집·사용계획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기부금의 모집자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기부금품법 제6조 제1항), 또한, 기부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모집자로부터 지시·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며(기부금품법 제6조 제2항),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결과가 공개되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기부금품법 제7조).

이러한 주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존재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구분	불이익	관련 규정
모집·사용계획서와 달리 모집한 경우	- 등록말소에 따른 기부금 반환	기부금품법 제10조 제1항 제3호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한 경우	- 등록말소에 따른 기부금 반환 -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부금품법 제10조 제1항 제5호 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접수한 경우	- 등록말소에 따른 기부금 반환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부금품법 제10조 제1항 제6호 기부금품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부금품법 제18조 제1항 제1호

7 기부금 모집완료 시 기부금 단체의 이행사항

모집자는 모집기간이 끝나거나 모집된 금액이 모집목표액에 이르면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하며, 중단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기부금품법 시행령 별지 제8호)를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할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기부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경우 다음의 사항을 해당 등록청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1.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3.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4. 기부금의 사용명세

만약, 상기의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모집등록 말소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반환해야 할 수 있으며(기부금품법 제10조 제1항 제10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제6의2).

기부금의 사용

기부금 단체가 모집한 기부금을 사용함에 있어 적용되는 법률은 기부금품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입니다.

기부금품법은 동 법률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에만 적용되는 법률인 반면, 상증세법은 기부금품법에 따른 모집여부와 관계없이 동 법에 따른 ‘공익법인’이 자산을 기부(출연)받은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

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상증세법에서는 상기의 ‘공익법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법인이 자산을 기부(출연)받은 경우 출연 받은 기부금을 출연목적에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거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증세법 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법인이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금을 모집한 경우 기부금품법에 규정된 사용의무를 준수해야함과 동시에 상증세법 상 기부금의 사용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의 사용과 관련된 의무사항에 대해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의 사용

기부금품법에 따라 모집완료된 기부금은 등록신청 시 제출한 “모집금품의 사용계획서”에 따라 기부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내역은 기부모집금출납부(기부금품법 시행령 별지 5호서식)와 기부모집물품출납부(기부금품법 시행령 별지6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기부금품법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은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부금품법 제12조 제1항).

- ① 기부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② 모집된 기부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등록청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품 처분·사용 계획서(기부금품법 시행령 별지 제 4호 서식)”를 작성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기부금의 사용을 마치면 지체없이 그 결과를 등록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7조).

등록청에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기부금품 처분·사용 계획서(기부금품법 시행령 별지 제4호 서식)”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기부금품 처분·사용 계획서

1. 모집등록번호와 등록연월일:
2. 모집금품 총량: 원 또는 점(환산액 원)

위 명세 모집예정 총량

모집 과부족량

3. 처분 및 사용하려는 이유:
4. 처분 및 사용하려는 방법:
(등록 당시의 방법과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5. 처분 및 사용일시와 장소:

위와 같이 처분 및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모집자의 주소

성명

(인)

귀하

모집된 기부금을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록청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1.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3.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4. 기부금품의 사용명세

만약, 기부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말소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수 있으며(기부금품법 제10조 제1항 제8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제5호).

2 상증세법에 따른 기부금의 사용

상증세법 상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면제받는 대신 해당 기부금을 사용·관리함에 있어 상증세법 상 사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상증세법에서 기부받은 기부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기간, 사용목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를 추징하거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 출연받은 기부금의 사용의무

상증세법 상 기부금은 다음과 같이 출연재산, 매각대금, 운용소득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상증세법상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 증여세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1) 기부금은 기부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 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합니다(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여기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①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 ② 기부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 법인에 기부하는 경우(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 ③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총당하기 위하여 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기부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기부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였거나 미사용된 재산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재산의 가액 +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미사용 또는 미달 사용한 재산의 가액

2) 기부받은 기부금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

여기서 “매각대금”이란 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해당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것을 말하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는 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재산에 한함)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기부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①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②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또한,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2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6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미달사용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7항).

상기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사용비율	미달사용하는 경우
1년 이내	30%	미달사용액의 10% 가산세 부과
2년 이내	60%	미달사용액의 10% 가산세 부과
3년 이내	90%	미달사용액을 증여가액으로 증여세 부과

3) 기부받은 기부금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및 제5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말하므로(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이 기간내에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용소득의 경우,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상기의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6 , 2004.12.10.

[회 신]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그 운용소득 중 관계회사 대여금 등 수익용으로 사용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부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른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2).

$$\text{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출연재산(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 가액} \times \frac{\text{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금액}}{\text{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

또한, 기부받은 재산의 운용소득금액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70%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달하게 사용한 운용소득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참고로 “운용소득”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말합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 기부받은 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 기부받은 재산의 매각금액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
- (+) 기부받은 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
- (-)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 (+)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 - 미달금액에 대한 가산세

(2) 주식을 기부받은 경우에 지켜야 할 규정

상증세법에서는 1) 기부받은 주식이 법에서 정한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와 2)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 중 주식이액의 비율이 법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증여세 추징 및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받은 주식이 아래에서 서술할 상증세법 상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해당 주식을 기부받고, 보유함에 있어 상증세법 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1) 기부받은 주식이 법에서 정한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상증세법 상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기부받은 경우로서 기부일 현재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이때, 5%(10%)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공익법인이 기부일 현재 기부받은 주식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주식을 모두 합하여 5%(10%)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 ① 기부일 현재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주식
- ② 기부자가 기부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 ③ 기부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 외의 다른 공익법인에 기부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 ④ 기부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기부받은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지분비율을 초과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증세법 제16조 제3항).

1. 성실공익법인등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등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하는 경우로서 해당 성실공익법인등이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

참고로 위에서 언급되고 있는 “특수관계인”과 “성실공익법인”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각호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자(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이나 사용자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함)을 포함]
 -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 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1. 외부감사의 이행
2.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3. 결산서류등의 공시
4. 장부의 작성·비치
5.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6.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7.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8. 광고·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상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4. 제3호의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2)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 중 주식가액의 비율이 법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의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외부감사,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유주식의 매사업연도말 현재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상증세법 제48조 제9항 및 제78조 제7항).

여기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PART 3_기부금 단체의 운영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기부하거나 보유한 경우의 해당 기업(해당 기업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속하는 다른 기업을 포함)을 말합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3항).

-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또는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와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소속 기업 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재산을 기부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다만, 성실공익법인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기부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은 상기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부금 사용 후 결과보고

모집된 기부금을 사용한 기부금 단체는 기부금의 사용이 적절했음을 관련 주무관청에 적절히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기부금 단체가 기부금을 사용한 후 주무관청에 보고해야하는 사항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1. 기부금품법에 따른 결과보고
2. 기부금 영수증 관련 결과보고
3. 상증세법 상 출연재산 관련 보고

이하에서는 상기의 결과보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부금품법에 따른 결과보고

모집한 기부금의 사용을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 (기부금품법 시행령 별지 제9호 서식)"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기부금품법 제1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다만, 기부금 모집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회계감사기관에 대한 감사의뢰 및 회계감사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부금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기부금품법 시행령 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기부금품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기부금 모집 금액이 1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기관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때는 기부금의 사용을 끝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기부금품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이나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제7호).

모집자가 제출하여야 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기부금품법 시행령 별지 제9호 서식)"는 다음과 같습니다.

2 기부금 영수증 관련 결과보고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자가 기부금공제의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증빙입니다. 따라서, 기부금 단체가 기부금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0호의2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7항 제3호의3에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기부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과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은 동일한 서식입니다).

상기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는 기부금 영수증의 발급 및 보관과 관련하여 이행해야하는 의무가 존재하는 바, 이하에서는 해당 의무사항, 의무불이행시의 불이익 및 관련서류와 제출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부금 영수증 관련 의무사항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기부자별 발급명세의 작성 및 제출의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명세를 말합니다.

- ①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 등의 소재지)
- ② 기부금액

- ③ 기부금 기부일자
- ④ 기부금 영수증 발급일자
- ⑤ 그 밖의 사항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제출의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연도가 12월 31일에 끝나는 기부금 단체의 경우 6월 30일까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의무불이행 시 세법상 불이익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아도 현재까지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이나 기부자별 발급명세와 관련한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 영수증의 경우

기부금을 받은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경우 혹은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때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이란 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이를 말하고, 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금액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하는 금액과의 차이를 말합니다.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으로 가. 이외의 경우 :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2%

2) 기부자별 발급명세의 경우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3) 기부금 영수증 관련 서류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전자제출 방법

기부금 단체는 기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야하며, 발급한 기부금영수증과 관련하여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정 서식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전자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 영수증 관련 법정 서식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서식] <개정 2013.2.23>

일련번호	
------	--

기부금 영수증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부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② 기부금 단체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소재지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③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④ 기부내용							
유형	코드	구분	연월일	내용			금액
				품명	수량	단가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② 기부금 단체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예,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 ③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기부금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④ 기부내용의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기부금 구분	유형	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	2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지정	4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종교단체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우리사주	42
필요경비(손금) 및 소득공제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공제제외	50

- ④ 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 <개정 2012.2.28>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사업연도 (과세기간)	. . . ~ . . .
----------------	---------------

1.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단체)	① 단 체 명		② 대 표 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고유 번호)		④ 전화번호	
	⑤ 소 재 지			
	⑥ 유 형 (해당란에 √)	<input type="checkbox"/> 정부등 공공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종교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 <input type="checkbox"/> 자선 <input type="checkbox"/> 의료 <input type="checkbox"/> 문화 <input type="checkbox"/> 학술 <input type="checkbox"/> 기타		

2.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현황

(단위: 원)

⑦ 구 분	⑧ 합 계		⑨ 법정기부금		⑩ 특례기부금		⑪ 지정기부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⑫ 기부자								
법 인								
개 인								

「소득세법」 제160조의3제3항 및 「법인세법」 제112조의2제3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⑥ 유형란: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단체)에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3. ⑧ ~ ⑪ 란: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총 발급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전자제출 방법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홈택스 접속 후 아래의 화면에서 신고/납부 클릭



나.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클릭



다. 직접작성제출 클릭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Tax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are navigation tabs for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and '상답/제보'. Below these, a breadcrumb trail indicates '신고/납부' > '일반신고' >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and includes a 'Step 1. 일반신고' and 'Step 2. 제출내역' section. A prominent yellow button labeled '직접작성제출' is highlighted with a red rectangular box. To the right, there is a vertical sidebar with various service icons and a 'QUICK' section. Below the button, there are instructions and a '도움말' (Help) link.

라. 기본정보 입력(법인의 사업자번호는 확인을 클릭하여 정상여부 확인)

The screenshot displays the '기본정보 입력' (Basic Information Input) form. It contains several sections:

- 기본사항**: Fields for '공산년월' (2015-12), '사업자등록번호' (with a '확인' button), and '세무작성하기' / '작성자로 불러오기' buttons.
- 사업자세부사항**: Fields for '단체명(법인명)',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연차우편주소', '소재지(주소)', '주소검색', '건물명(아파트,상가)', '유형' (with radio buttons for '정부등공공', '교육', '종교', '사회복지', '자선', '의료', '문화', '학술', '기타'), and '사업년도' (2015-01-01 to 2015-12-31).
- 기부금영수증발급 현황**: A table showing the status of donation receipts.

 The table at the bottom is as follows:

구분	(12) 합계		(9) 법정기부금		(10) 특례기부금		(11) 자정기부금	
	건수(건)	금액(원)	건수(건)	금액(원)	건수(건)	금액(원)	건수(건)	금액(원)
법인	2	3,000,000					2	3,000,000
개인	2	500,000					2	500,000

 At the bottom of the form, there is a '신고서 작성완료' (Finish Declaration) button.

마. 기부금 영수증 발급현황에서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건수 및 발급금액을 기재하고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한 후 제출

3 상증세법 상 출연재산 관련 보고

상증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 기부자로부터 기부받은 기부금이 공익목적에 사용되었는지 및 공익법인이 상증세법 상 지켜야할 의무사항을 적정하게 준수하였는지의 결과를 과세관청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증세법 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기부금 단체의 경우 기부금의 사용내역 등에 대한 결과보고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며, 해당 결과보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과 등 세법 상 불이익이 존재하는 바, 이하에서는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의 결과보고 의무사항, 의무미이행 시의 불이익 및 관련서식의 전자제출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고서 등의 제출의무

재산을 기부받은 공익법인은 “결산에 관한 서류” 및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등에 관한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공익법인이 상기의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에 출연재산·운용소득 및 매각재산 등의 명세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과세합니다(상증세법 제78조 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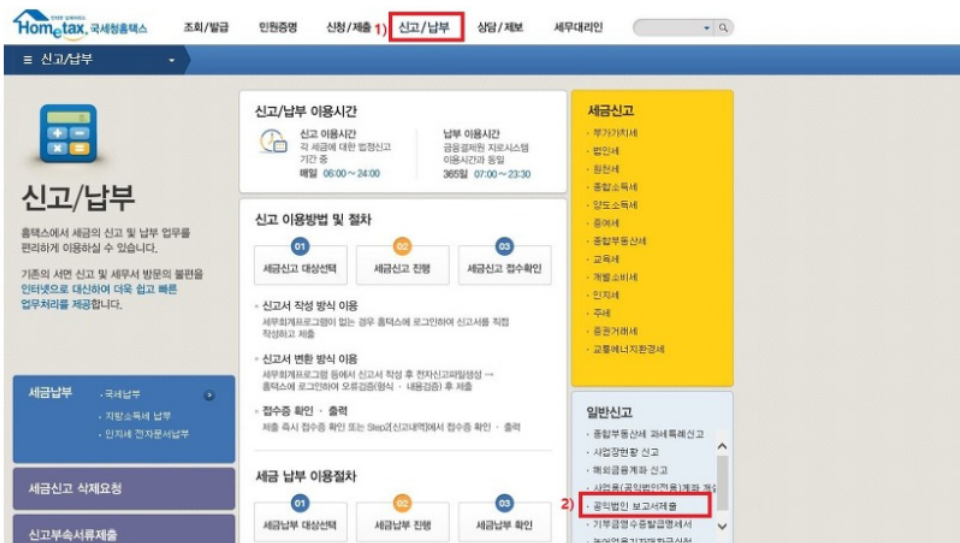
공익법인이 제출해야 할 “결산에 관한 서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에 한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등에 관한 서류”는 ①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② 출연재산(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③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 ④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에 관한 다음의 서식을 말하는 것입니다(부록 참조).

1. 상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2. 상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 내역서
3. 상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4. 상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5. 상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의한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6. 상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
7. 상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의한 이사등선임명세서
8. 상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의한 특정기업광고등명세서

상기의 서식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제출이 가능합니다. 이하에서는 상기 서식의 전자제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등에 관한 서류” 의 전자제출 방법

- 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클릭



② 공익법인 보고서 작성하기 클릭

≡ 신고/납부
일반신고
공익법인 보고서제출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Step 1. 일반신고
Step 2. 제출내역

- [Step 1. 일반신고] 신고안내 및 신고서 작성(변환) 제출 단계입니다.
- 해당 신고기간 내 여러 번 신고를 하는 경우 최종 제출 신고된 내용만 철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금신고 후 접수증의 접수결과(정산)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증 및 신고요약정보는 [Step 2. 제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제출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보고서와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도움말

● 일반신고

공익법인 보고서
작성하기

정기신고 방법

-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정규모 이상으로 세무확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세무확인서를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 결산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보고서 신고제출 완료 후 신고기간 이내에 Step2.제출내역에서 현오른쪽 증명자료를 클릭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공익법인의 기본정보 입력

제출여부 >>> 작성중입니다.
미리보기

01. 기본정보 입력

02. 공익법인출연재산신고서

03.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04.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05. 출연재산 배각대금 사용명세서

06. 운송소득 사용명세서

07. 주식(출자분) 보유명세서

08. 이사 등 선임명세서

09. 이사 등 선임명세서 기준 초과 경비명세서

10.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11. 세무확인서

12. 신고자료 제출

13. 종료

● 기본정보 입력

- 이달의 전자신고대상 공익법인의 사업연도는 2015/06 ~ 2016/05 입니다. 이후 사업연도는 입력은 가능하지만 제출은 해당기간에 가능합니다.
(기한후 제출은 결산연도 제출기한 기준으로 1년까지이며 그 이후부터는 서면제출만 가능합니다.)
예) 201512월말 법인은 2017년 2월까지 홈택스 제출가능

● 사업자 새로 작성하기 신고서 불러오기

결산년월 년 - 선택 월

* (2) 사업자등록번호 - - 확인 ※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사업자 세부사항

* (1) 상호(공익법인명)

* (3) 성명(대표자)

* (4) 사업연도 년 - 선택 월 선택 일 - 년 - 선택 월 - 선택 일

* 소재지 주소검색

도로명 주소

지번주소

건물명(아파트,상가) 동 층 호

* (7) 전화번호 - -

* (6) 전자우편주소 @ 직점입력

* (8) 공역사업유형 교육 학술, 장학, 자선 사회복지 의료 종교 문화 기타

④ 왼쪽 메뉴의 순서에 따라 관련된 서식을 순서대로 작성

02. 공익법인출연재산보고서

03.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04.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05.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06. 운동소득 사용명세서

07.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08. 이사 등 선임명세서

09. 이사 등 선임명세서 기준조과 경비명세서

10. 특징기업광고 등 명세서

11. 세무확인서

12. 신고자료 제출

13. 종료

●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및 사용명세서, 그리고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이 완료되지 않은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내역(해당 사용연도 사용분)을 작성하며, 출연재산별로 출연일이 빠른 순서로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2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출연받은 재산사용명세서 엑셀문서 서식받기



1.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를 **직접 화면에서** 작성합니다.

작성



2.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엑셀폼으로 작성한 명세서 파일을 불러옵니다.

엑셀 불러오기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입력방법 안내>

- 『작성』 방법
 -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내역을 직접 입력합니다.
 - [작성]으로 입력한 경우 [엑셀 불러오기]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택내용삭제] 버튼으로 모든 자료를 삭제하면 [엑셀 불러오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엑셀 불러오기』 방법
 - [엑셀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엑셀폼에서 작성한 출연받은재산(3.토지, 4.건물)을 제외한 파일을 선택하여 오류검증을 거치고 (3.토지, 4.건물)은 직접입력방식으로 입력합니다.

⑤ 서식 작성이 완료되면 전자제출 후 신고서 제출 접수증을 출력하여 보관

신고서 제출 접수증

사용자 ID		사용자명		접수일시	2016-03-28 11:12:10
접수결과	정상	접수번호	318-2016-2-		
· 제출내용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314-82-		
과세년월	2015-01	신고구분	경기신고		
신고서종류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첨부한서류	6		

위와 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 * 주의 : 접수증에 표시된 금액이 실제 신고하고자 하는 금액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세무서 전자신고 창구에서 도움을 받아 신고한 경우에도 모든 책임은 납세자의 귀하에 있으니 최종신고서 작성내용을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해당 신고기간내에 다시 신고(신고내용의 변경 유무에 상관 없음)하는 경우에는 최종 신고한 내용만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결산서류 공시의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기부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을 해당 공익법인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상증세법 제50조의 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3 제1항).

다만,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기부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과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은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상증세법 제50조의 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3 제2항).

만약,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이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상증세법 제50조의 3 제2항), 국세청장의 공시 또는 시정 요구를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그 공익법인등의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상증세법 제78조 제11항).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도 자율적으로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할 수 있는바(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의 3 제4항),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여부에 따라 공익법인이 공시해야하는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부록 참조).

-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이 공시해야 할 서식
 - ①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상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 ②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수지계산서)
 - ③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인 경우 감사보고서
 - ④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 명세서(상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부표1)
 - ⑤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상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부표2)
 - ⑥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상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부표3)
 - ⑦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상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부표4)
-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가 없는 공익법인의 공시서식
 - ①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상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 2 서식)

1) 결산서류 전자공시 방법

- 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오른쪽 상단의 “공익법인 공시” 클릭



② 공시/공개 등록하기에서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클릭



③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 “의무공시 결산서류 작성하기” 클릭



④ 기본정보 입력 후 왼쪽메뉴의 순서에 따라 정보 입력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Step 1. 결산서류 등 등록	Step 2. 제출내역	
01. 기본정보 입력	제출여부 >>>> 작성중입니다. 미리보기	
02. 자산보유 및 수입금액 등 현황	* 기본정보 입력(의무공시) 세도 작성하기 신고서 붙여오기	
03. 교육목적사업 세부현황	* (1) 결산연월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월	
04. 교육목적사업 및 수입사업 수입금액 등 세부현황	* (2)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확인"/> * 확인해야만 세부 사항을 입력 할 수 있습니다.	
06. 교육목적사업 및 프로그램 이 세부현황	* (3) 대표자 <input type="text"/>	
08. 기부금활의 모인 및 지출일세서	* (4) 설립연월일 <input type="text"/>	
07. 주식등의 출연, 취득, 보유 및 처분일세서	* (5) 설립근거 <input type="text"/>	
08.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인원 현황일세서	* (6) 소재지(주소) <input type="text"/>	
09. 출연인원 자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 (7) 홈페이지 <input type="text"/>	
10. 대차대조표	* (8) 전자우편주소 <input type="text"/>	
11. 손익계산서	* (9) 공익사업유형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학술, 장학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 <input type="checkbox"/> 의료 <input type="checkbox"/> 문화 <input type="checkbox"/> 기타	
12. 감사보고서 첨부 서류	* (10) 설립 근거법 <input type="text"/>	
13. 신고서 제출	* (11) 주주관할 <input type="text"/>	
14. 종료	* (12) 기부금(단체)유형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지명 <input type="checkbox"/> 기타	
	* (13) 설립주체 <input type="checkbox"/> 개인+가족 <input type="checkbox"/> 기업 <input type="checkbox"/> 기업+개인 <input type="checkbox"/> 종교단체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input type="checkbox"/> 국가, 지방자치단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 (14) 단체유형 <input type="checkbox"/> 재민법인 <input type="checkbox"/> 사민법인 <input type="checkbox"/> 인가단체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단체	
	* (15) 이사수 <input type="text"/> 명	
	* (16) 직원총수 <input type="text"/> 명	
	* (17) 자원봉사자수 <input type="text"/> 명	
	* (34) 복식부기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부	
	* (38) 회계감사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부	
	* (35) 세무확인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부	
	재 공시 사유 <input type="text"/>	

⑤ 모든 서식 작성하여 제출한 후 공시 접수증 출력 후 보관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접수증



· 접수내용

사용자ID		사용자명	
접수번호	206-2016-2-	접수일시	2016-04-28 20:56:16
접수결과	정상		

· 제출내용

(단위: 원)

서식명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의무공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제출년월	2016-04
사업연도	2015-01-01 ~ 2015-12-31	공익사업유형	
결산서류 공시 구비서류 건수	8종(보고서 포함)	감사보고서 건수	1건
총자산가액	원	총수입금액	원
재공시 사유			

위와 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3)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의무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기부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며(상증세법 제50조 제1항), 세무확인을 받은 “외부전문가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세무확인서”를 해당 공익법인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다만, 다음의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 43조 제2항).

1.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 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출연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출연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으로 한정)

만약,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기부 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100만원 중 큰 금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합니다(상증세법 제78조 제5항).

외부전문가가 작성해야 할 세무확인서식(상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은 다음과 같으며(부록참조),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전자제출 할 때 함께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공익법인의 세무확인서(상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2.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집계표(상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부표1)
3. 출연자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상증세법 시행규칙 별제 제32호 부표2)
4. 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상증세법 시행규칙 별제 제32호 부표3)
5. 재산의운용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상증세법 시행규칙 별제 제32호 부표4)
6. 장부의작성·비치의무 불이행등명세서(상증세법 시행규칙 별제 제32호 부표5)
7. 보유부동산명세서(상증세법 시행규칙 별제 제32호 부표6)

기부자의 세제혜택

- 1장 법정기부금 단체와 지정기부금 단체의 종류
- 2장 기부자의 세제혜택

PART

04

01

법정기부금 단체와 지정기부금 단체의 종류

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기부자는 기부를 하고 수령하게 되는 기부금 영수증을 근거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한 개인기부자의 경우 사업소득을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 세액공제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기부자의 경우 법인세 산정 시 해당 기부금액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기부자가 해당 단체 또는 법인에게 기부한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기부금 단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기부금 단체가 법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지 혹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기부자가 얻게 되는 세제혜택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기부금 단체와 지정기부금 단체의 종류 및 해당 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자가 얻게 되는 세제혜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에서는 지정기부금 단체(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와 법정기부금 단체(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에 기부를 한 경우 기부자는 세제혜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부금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기부금 단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
 -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사.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 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에 한함)
5.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 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 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 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마.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 바.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 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 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 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 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 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 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 6.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
 - 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 1.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정기부금 단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

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함)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
-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함)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함)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 나) 사회적협동조합 :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 2) 해산을 하면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4)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 5) 제1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 제1호의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 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나목 1)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 가.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 1)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 2)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
 - 3)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가를 전부 부담하는 시설
-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 1)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포함) 외의 자가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물 판매시설
 - 3)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 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 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 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 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기관과 부랑인·노숙인 시설
 - 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 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외국법인(단체를 포함)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정기부금단체"라 함)에 대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지정기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
- 가. 비영리외국법인으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 것
 - 나. 제1항 제1호 사목 1)부터 5)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비영리외국법인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요건을 적용한다.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 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
 - 나.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을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
 -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나.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다.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3.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 가.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이 위탁자의 사망 전에 종료하는 경우 신탁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할 것
- 나. 신탁설정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
- 다. 위탁자와 가목의 공익법인 등 사이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3호에 해당하는 특수 관계가 없을 것
- 라. 금전으로 신탁할 것
4. 삭제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함)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나.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 다.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라.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 마.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
- 바.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사.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기부자의 세제혜택

기부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및 기부단체가 법정기부금 단체인지, 지정기부금 단체인지 여부에 따라 기부자가 얻게 되는 세제혜택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자	기부금 단체	세제혜택
개인(사업소득만 있는 자)	법정기부금 단체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적용 (1) 필요경비 산입한도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1) - 정치자금기부금(*2) - 이월결손금] × 100% (2)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 5년 이월공제 가능
	지정기부금 단체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적용 (1) 필요경비 산입한도 ①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1) - 정치자금기부금(*2)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이월결손금] × 10% + min{[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1) - 정치자금기부금(*2)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이월결손금] × 20%,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기부금} ②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1) - 정치자금기부금(*2)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이월결손금] × 30% (2)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 5년 이월공제 가능
개인(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도 있는 자)	법정기부금 단체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1) 세액공제금액 : [기부금-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 × 15%(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2) 기부금 한도 : [종합소득금액(*3)-정치자금기부금] (3)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 5년 이월공제 가능
	지정기부금 단체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1) 세액공제금액 : [기부금-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 × 15%(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2) 기부금 한도 ①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 [종합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0% + [(종합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20%와 종교

기부자	기부금 단체	세제혜택
		단체 외에 지급한 기부금 중 적은 금액] ②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 (종합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 (3)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 5년 이월공제 가능
법인	법정기부금 단체	기부금 손금산입 적용 (1) 손금산입 한도 :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3) - 이월결손금] × 50% (2)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 5년 이월공제 가능
	지정기부금 단체	기부금 손금산입 적용 (1) 손금산입 한도 :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 기부금 손금산입액] × 10% (2)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 5년 이월공제 가능
개인 및 법인	비지정기부금 단체	기부금 세액공제 및 기부금 손금(필요경비)산입 적용되지 않음

(*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

(*2) 10만원 초과하는 정치자금 기부금

(*3) 종합소득금액 :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

(*4)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

부 록

1.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등에 관한 서류
2.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여부에 따라 공익법인이
공시해야하는 서식
3. 외부전문가가 작성해야 할 세무확인서식

1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등에 관한 서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2.2.28>

출연재산 · 운용소득 · 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①공익법인명				②사업연도								
구분	③출연 (운용소득 발생, 매각) 사업연도	④재산종류		⑤용도	기간		⑧금액	⑨ 해당 연도 의무 사용 기준 금액	사용금액			⑬ 기준 미달 사용 금액 (⑨-⑫)
		분류 코드	과목 명		⑥ 사용 시작일	⑦ 사용 종료일			⑩ 직전 연도 까지의 사용금액	⑪ 해당 연도 사용금액	⑫ 계 (⑩+⑪)	
출연 재산												
운용 소득												
매각 대금												

364mm × 25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부 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의2서식] <개정 2012.2.28>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①공익법인명			②사업연도							
③ 사업 연도 구분	④ 출연일	⑤출연자 ⑥ 주민등록 번호 등 소액계	출 연 재 산				⑩ 가액	⑪직전 사업연도 까지의 사용금액	해당 사업연도	
			⑦ 종류		⑧ 소재지	⑨ 수량 (면적)			⑫ 사용 금액	⑬ 사용처
			코드	과목명						
⑭ 해당 사업 연도										
	합 계									
⑮ 직전 사업 연도										
	합 계									
⑯ 직전 전사 업연 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부 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4서식] <개정 2016.3.21.>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①공익법인명	②사업연도
--------	-------

1. 전년도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구분	⑦ 해당 사업연도	⑧ 1년 전 사업연도	⑨ 2년 전 사업연도	⑩ 3년 전 사업연도	⑪ 4년 전 사업연도	⑫ 5년간의 평균 (⑦~⑪의 평균)
③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						
④ 사용기준액 (③ × $\frac{(\quad)}{100}$)						
⑤ 1년내 사용실적						
⑥ 과부족액 (⑤ - ④)						

2.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⑬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	가산액			차감액			
	⑭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⑮ 기타	⑯ 소계 (⑭+⑮)	⑰ 출연재산 양도차익	⑱ 법인세 등	⑲ 이월결손금	⑳ 소계 (⑰+⑱+⑲)
㉑ 차감감소득 (⑬+⑯-⑳)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 미달사용액			㉕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㉑+㉔)			
	㉒ 기준미달사용액	㉓ 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	㉔ 소계 (㉒-㉓)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부 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의2서식] (개정 2012.2.28)

이사 등 선임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공익법인명		사업연도	
-------	--	------	--

1. 이사 등 선임명세

이사 등 인적사항			④ 선임일	⑤ 해임일	⑥ 출연자와 의 관계	⑦ 출연법인파 의 관계	⑧ 다른 이사 와의 관계	⑨ 초과 여부	⑩ 비고
① 성명	② 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2. 기준초과 이사 및 임·직원에 대한 경비 명세

⑪ 성명	⑫ 주민등록 번호	⑬ 직책	⑭ 취임· 근무일	해당연도 경비 명세						⑰ 합계	⑱ 비고
				⑮ 급료	⑯ 판공비	⑰ 차량 유지비	⑱ 비서실 운영비	⑲ 그 밖의 경비	⑳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여부에 따라 공익법인이 공시해야하는 서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6.3.21.>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제1쪽)

1. 기본사항

사업연도(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정기공시 [] 해산공시
① 공익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 대표자		④ 설립연월일	
⑤ 소재지		⑥ 전화번호/팩스	/
⑦ 홈페이지 주소		⑧ 전자우편주소	
⑨ 공익사업유형		⑩ 설립근거법	
⑪ 주무관청		⑫ 기부금(단체) 유형	[] 법정 [] 지정 [] 기타
⑬ 설립주체	[] 개인+가족 [] 기업 [] 기업+개인 [] 종교단체 [] 지역사회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기타		
⑭ 단체유형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인가단체 [] 공공기관 [] 기타		
⑮ 이사 수	명	⑯ 고용직원 수	명
		⑰ 자원봉사자 수	명

2. 자산보유현황

(단위: 원)

구분	⑱ 총자산가액	⑲ 토지	⑳ 건물	㉑ 주식 및 출자지분	㉒ 금융자산	㉓ 기타 자산
㉔ 총계 (a=b+c)						
㉕ 고유목적사업 ㉖ 수익사업						

3.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현황

(단위: 원)

구분	㉗ 소득금액	㉘ 수입금액				㉙ 필요경비		
		㉚ 소계	㉛ 기부금	㉜ 보조금	㉝ 기타 사업수입	㉞ 소계	㉟ 목적 사업비	㊱ 일반관리 및 모공비
㉔ 총계 (a=b+c)								
㉕ 고유목적사업 ㉖ 수익사업								

4.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

㉗ 복식부기 여부	[] 여 [] 부	㉘ 회계감사 여부	[] 여 [] 부
㉙ 세무확인 여부	[] 여 [] 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 ·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제출서류	1.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수지계산서) 2.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 3.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명세서 4. 주식등의 출연·취득·보유·처분 명세서 5.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6.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의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다만, 종교법인 제외)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1. 기본사항

- 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대하여 공시하는 경우 "해산공시"에, 그 외의 경우 "정기공시"에 √ 표를 합니다.
- 나. ⑨란의 공익사업유형은 1. 교육, 2. 학술·장학, 3. 사회복지, 4. 의료, 5. 문화, 6. 기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 다. "⑩ 설립근거법"란은 해당 법률을 모두 적습니다. 예) 학교법인 xxx학원의 경우: 「민법」 제32조, 「사립학교법」
- 라. "⑫ 기부금(단체) 유형"란은 해당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대상 단체인 경우 "법정"에,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인 경우 "지정"에, 그 밖의 경우 "기타"에 √ 표를 합니다.
- 마. "⑬ 설립주체"란은 설립주체(기본재산 출연자)에 √ 표를 합니다.
 - ※ 설립주체
 - (개인+가족) 개인 또는 가족이 설립한 단체, (기업) 기업이 설립한 단체, (기업+개인) 기업과 개인이 함께 설립한 단체
 - (종교단체) 종교인 또는 종교단체가 설립한 단체, (지역사회) 특정 행정구역에 속한 주민이 설립한 단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설립한 단체, (기타) 그 밖의 주체가 설립한 단체
- 바. "⑭ 단체유형"란은 해당되는 단체유형에 √ 표를 합니다. (※ 인가단체: 지정기부금 단체 중 법인 아닌 단체)
- 사. "⑮ 이사 수"란은 등기사항증명서상 이사 수를 적습니다.
- 아. "⑯ 고용직원 수"란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원 수(학교법인의 경우 사학연구기업자 포함)를 적습니다.
- 자. "⑰ 자원봉사자 수"란은 연간 1회 이상 자원봉사한 사람의 수를 적습니다.

2. 자산보유현황

- 가. ⑱란의 총자산가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을 적습니다.
- 나. ⑲란부터 ㉓란까지의 자산종류별 가액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해당 계정과목의 금액을 적으며, ㉔ 금융자산란은 ㉑ 주식 및 출자지분을 제외한 금융자산을 적습니다.
 - ※ "고유목적사업"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을 말하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은 제외합니다.
 - ※ "수익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열거된 수익사업을 말합니다

3.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현황

- 가. "㉔ 소득금액"란은 "㉕ 수입금액"에서 "㉓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적습니다.
- 나. "㉕ 수입금액"란과 "㉓ 필요경비"란은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기부금, 보조금, 기타고유목적사업수입)과 필요경비(목적사업비, 일반관리 및 모금비), 수익사업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각각 적습니다.
 - ※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에 대한 세부현황은 4쪽 "6.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세부현황"에, 필요경비에 대한 세부현황은 6쪽 "8. 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 세부현황"에 각각 적습니다.
 - ※ 수익사업의 수입금액(필요경비)에 대한 세부현황은 4쪽 "7. 수익사업 수입금액(필요경비) 세부현황"에 적습니다.
- 다. "㉖ 보조금"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적습니다.
- 라. "㉗ 기타사업수입"란은 기부금, 보조금 외의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 마. "㉘ 목적사업비"란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발생한 총비용(6쪽 "8. 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 세부현황"의 목적사업비 총액)을 적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의 수익사업은 제외하며, "기타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집 비용과 "기타모금비용"란은 "㉓ 일반관리 및 모금비"에 적습니다.
- 바. "㉓ 일반관리 및 모금비"란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관리·지원하기 위한 단체 운영 및 모금활동 관련 총지출 금액(6쪽 "8. 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 세부현황"의 일반관리 및 모금비 총액)을 적습니다.

4. 세무확인과 회계감사

- 가. "㉙ 복식부기 여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에 따른 복식부기형식의 장부를 작성·비치한 경우 "여"에,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부"에 √ 표를 합니다.
- 나. "㉚ 세무확인 여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경우 "여"에, 받지 않은 경우 "부"에 √ 표를 합니다.
- 다. "㉛ 회계감사 여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여"에, 받지 않은 경우 "부"에 √ 표를 합니다.

(제3쪽)

5. 고유목적사업 세부현황

① 고유목적사업 현황

② 사업내용

[]예술, 문화, 스포츠 []학교 경영 및 교육연구 []학자금, 장학금지원 []병원경영, 의료, 보건
 []사회복지 []환경, 동식물보존, 유물 []지역개발, 주거/자원봉사 []법률, 정치 []모금 및 배분
 []국제개발, 해외원조 []경제 산업, 고용 []기타

③ 사업대상

[]모두 해당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다문화) []가족, 여성 []일반대중 []기타

④ 국내 주요 사업지역

[]전국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세종 []제주 []해당 없음

⑤ 국외 주요 사업지역

[]전세계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 []해당 없음

⑥ 사회복지법인, 장학재단, 재단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사업명, 사업지역, 수혜인원, 사업내용, 사업비)을 적습니다.

1	사업명		사업비	원
사업 실적				
2	사업명		사업비	원
사업 실적				
3	사업명		사업비	원
사업 실적				
4	그 외 사업	개	사업비	원
합계	총 목적사업	개	사업비 합계	원

작성방법

5. 고유목적사업 세부현황

가. "① 고유목적사업 현황"란은 고유목적사업의 주요 업무, 실적 및 향후계획을 적습니다.

나. ②부터 ⑤까지 []에는 해당되는 곳에 모두 √ 표를 합니다.

다. ⑥란은 사회복지법인, 장학재단, 재단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사업명, 사업지역, 수혜인원, 사업내용, 사업비)을 적습니다. 다만, 사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사업비가 많은 3개 사업의 사업실적을 적습니다.

라. ⑥란의 사업비 합계는 6쪽 "8. 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 세부현황"의 당기 목적사업비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6.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세부현황

(단위: 원)

구 분	사업연도(과세기간)	
	당 기	전 기
1. 기부금		
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모금액		
② 개인기부금		
③ 행사모금액		
④ 기업, 단체기부금		
⑤ 모금단체, 재단의 지원금		
⑥ 기타 기부금		
⑦ 기부물품		
2. 보조금		
3. 기타고유목적사업수입		
① 회원회비 수입		
② 등록금 수입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총 합계 (1+2+3)		

7. 수익사업 수입금액(필요경비) 세부현황

(단위: 원)

구분	① 합계	수익사업							
		금 용				부 동 산			⑨ 기타 수익 사업
		② 소계	③ 이자	④ 배당	⑤ 기타	⑥ 소계	⑦ 임대	⑧ 매각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방법

6.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세부현황

가. 기부금(①~⑦의 합)

- 1) ①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모금한 기부금을 적습니다.
- 2) "② 개인기부금"란은 개인기부자(후원회원 포함)의 기부금을 적습니다.
- 3) "③ 행사모금액"란은 온라인 모금과 자선 바자회·경매 등의 모금 행사를 통한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 4) "④ 기업, 단체기부금"란은 기업의 사회공헌으로 기업과 계약을 맺은 기부금과 다른 단체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적습니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단체를 통하여 자원받은 기부금은 "⑤ 모금단체, 재단의 지원금"란에 적습니다.
- 5) "⑤ 모금단체, 재단의 지원금"란은 전문모금 및 기금배분단체(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와 기업재단 등 외부공모,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적습니다.
- 6) "⑥ 기타기부금"란은 ①부터 ⑤까지 외의 기부금을 적습니다.
- 7) "⑦ 기부물품"란은 ①~⑥의 기부금 중 상품, 제품 등 물품(주식·채권 제외)으로 기부받은 경우에 적습니다.

나. "보조금"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적습니다.

다. 기타고유목적사업수입(①~⑩의 합)

- 1) "① 회원회비 수입"란은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수입을 적습니다.
- 2) "② 등록금 수입"란은 학교법인의 등록금(교비) 수입을 적습니다.
- 3) ③~⑩란은 ①, ② 외의 기타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7. 수익사업 수입금액(필요경비) 세부현황

- 가. ①란의 합계란은 "수익사업"란의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나. "⑤ 기타"란은 주식과 채권 등의 매도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 다. "⑨ 기타수익사업"란은 부동산 임대·매각 소득 외의 수익사업의 금액을 적습니다.

8. 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 세부현황

(단위: 원)

구 분	사업연도(과세기간)					
	당기			전기		
	계	목적사업비	일반관리 및 모금비	계	목적사업비	일반관리 및 모금비
① 목적사업 지출금						
1) 국 내						
2) 국 외						
② 회원관리비						
③ 급여						
1) 상용근로자						
2) 일용근로자						
④ 퇴직급여						
⑤ 사회보험부담금						
⑥ 복리후생비						
⑦ 업무추진비						
⑧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모집비용						
⑨ 기타 모금비용						
⑩ 회의비						
⑪ 여비교통비						
⑫ 통신비						
⑬ 수도광열비						
⑭ 임차료						
⑮ 세금과 공과금						
⑯ 수선비						
⑰ 보험료						
⑱ 차량유지비						
⑲ 교육훈련비						
⑳ 도서 등 구입비 및 인쇄비						
㉑ 사무용품비						
㉒ 지급수수료(회계, 법률 자문 등)						
㉓ 외주비						
㉔ 감가상각비						
㉕ 무형자산상각비						
㉖ 광고선전비						
㉗ 이자비용						
㉘ 기타 비용						
1)						
2)						
3)						
4)						
5)						
총 합계 (①~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방법

8. 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 세부현황

- 가. "목적사업비"란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발생한 비용**을 열거된 비용항목별로 적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은 제외하며, "⑧「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모집비용"과 "⑨ 기타모금비용"란은 "일반관리 및 모금비"란에 적습니다.
- 나. "일반관리 및 모금비"란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관리·지원하기 위한 단체 운영 및 모금활동 관련 비용**을 적습니다.
- 다. "① 목적사업 지출금"란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발생한 비용(목적사업비) 중 목적사업에 직접 지출된 본연의 사업비(급여, 광고선전비 등 ②번~⑩항목은 제외하며 아래 예시를 참고)의 합계(1)국내+2)해외**를 "목적사업비"란에 적습니다.
 - 1) "1) 국내"란은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비를, "2) 국외"란은 국외에서 발생한 사업비를 적습니다. 다만, 국내 소득신고 의무를 지닌 해외 파견 인력의 인건비는 "③급여"란에 적습니다.
 - (※ 예시 - 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비용 등, 사회복지법인(사설):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사업 비용 등, 문화예술단체: 공연·전시비용 등, 사립학교법인: 연구비용 등, 모금 및 배분 사업단체·기업재단·공익재단: 배분비용 등,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비용, 시민사회단체: 옹호활동·연구비용 등)
- 라. **②번~⑩번란에 열거되어 있는 항목은 항목별로 '목적사업비'와 '일반관리 및 모금비'로 그 사용 용도를 구분**하여 적되, 해당 란이 음영된 란은 적지 않으며, 음영되지 않은 부분에 적습니다.
 - 1) "② 회원관리비"란은 개인·단체 회원 및 후원자를 위한 관리비로서 "일반관리 및 모금비"에 적습니다. 예) 대중모금단체인 경우 개인, 기업, 단체 후원자들에 대한 관리비용
 - 2) "③ 급여"란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임직원에게 지급한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등의 급여**(「소득세법」 제 20 조)로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합계(국내 소득신고 의무를 지닌 해외 파견 인력 인건비 포함)을 적습니다.
 - 예) 고유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의 급여는 "목적사업비"란에, 단체 운영, 관리, 행정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단체 대표 포함)들과 모금·모집 및 홍보활동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의 급여는 "일반관리 및 모금비"에 적습니다.
 - 3) "1) 상용근로자"란은 일용근로자 외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적습니다.
 - 4) "2) 일용근로자"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20 조에 따른 일용근로자(단기아르바이트, 임시근로자 등)에게 지급한 급여를 적습니다.
 - 5) "④ 퇴직급여"란은 근로자의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한 퇴직금(「소득세법」 제 22 조)을 적습니다.
 - 6) "⑤ 사회보험부담금"란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에 따른 부담금을 적습니다.
 - 7) "⑥ 복리후생비"란은 근로자(임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를 적습니다.
 - 8) "⑦ 업무추진비"란은 공익법인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을 적습니다. [※ 지급한 비용이 급여(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③ 급여"란의 "1) 상용근로자"란에 적습니다]
 - 9) "⑧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모집비용"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 12 조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 25 조에 따른 모집(모금)비용을 "일반관리 및 모금비"란에 적습니다. 다만, 급여, 광고선전비 등 **②번~⑩항목에** 열거된 항목은 해당 항목에 적습니다.
 - 10) "⑨ 기타 모금비용"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집비용 외의 모금(모집)비용을 "일반관리 및 모금비"란에 적습니다. 다만, 급여, 광고선전비 등 **②번~⑩항목에** 열거된 항목은 해당 항목에 적습니다.
 - 11) "⑩ 회의비"란은 회의 관련 장소 임차료, 식비 등을 적습니다.
 - 12) "⑪ 여비교통비"란은 근로자(임·직원)의 출장 여비(숙박료, 식대 포함) 및 교통비(대중교통요금, 항공료, 통행료, 주차료 등)를 적습니다.
 - 13) "⑫ 통신비"란은 전화요금, 인터넷사용료, 우편료 등을 적습니다.
 - 14) "⑬ 수도광열비"란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수도료, 전기료, 가스료 등을 적습니다.
 - 15) "⑭ 임차료"란은 고유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위한 임차비용 등으로 "목적사업비"란에 적습니다. 다만, 일반관리 및 모금활동 수행을 위한 임차비용 등은 "일반관리 및 모금비"란에 적습니다.
 - 16) "⑮ 세금과 공과금"란은 국세, 지방세, 공과금, 벌금, 과료 등을 적습니다.
 - 17) "⑯ 수선비"란은 장비·시설의 유지보수비를 적습니다.

210mm x 297mm [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작성방법

8. 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 세부현황

- 18) "⑰ 보험료"란은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의 사고 및 화재에 대비해 지급한 보험료(자동차보험료, 건물 화재보험료 등)를 적습니다.
- 19) "⑱ 차량유지비"란은 공익법인등의 소유차량의 유지비용(유류비, 통행료, 주차료, 수리비 등)을 적습니다.
- 20) "⑲ 교육훈련비"란은 근로자(임직원)의 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적습니다.

예) 고유목적사업 직접 수행 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교육훈련 등은 "목적사업비"란에, 일반관리, 행정, 모금활동수행 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등은 "일반관리 및 모금비"란에 적습니다.
- 21) "㉔ 도서 등 구입비 및 인쇄비"란은 도서, 신문, 잡지 구입이나 인쇄비(명함인쇄비 등)를 적습니다.
- 22) "㉕ 사무용품비"란은 업무 관련 소모성 물품의 구입비용을 적습니다.
- 23) "㉖ 지급수수료(회계, 법률 자문 등)"란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에게 수수료, 기장료 등으로 지급한 비용, 도메인 등록비용, 금융수수료, 회원단체 가입비 등을 적습니다.
- 24) "㉗ 외주비"란은 외주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을 적습니다.
- 25) "㉘ 감가상각비"란은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적습니다.
- 26) "㉙ 무형자산상각비"란은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를 적습니다.
- 27) "㉚ 광고선전비"란은 단체 홍보 및 모금활동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일반관리 및 모금비"란에 적습니다. (신문 등 대중매체 광고 비용 등)
- 28) "㉛ 이자비용"란은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비용을 적습니다.
- 29) "㉜ 기타 비용"란은 ①~㉗란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비용을 적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1] <개정 2014.3.1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 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단위: 원)

① 월별 전기이월	② 수입	③ 지출	④ 잔액	월별 8월	수입	지출	잔액
1월	-	-		9월			
2월				10월			
3월				11월			
4월				12월			
5월				합계			
6월				차기이월	-	-	
7월							

2. 기부금 지출 명세서 (국내사업)

(단위: 원)

⑤ 지출월	⑥ 지급목적	⑦ 지급건수	⑧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⑨ 금액
⑩ 사업연도 (과세기간)	⑪ 지급목적	⑫ 수혜인원	⑬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⑭ 금액
합 계				

3. 기부금 지출 명세서 (국외사업)

(단위: 원)

⑮ 지출월	⑯ 국가명	⑰ 지급목적	⑱ 지급건수	⑲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⑳ 금액
㉑ 사업연도 (과세기간)	㉒ 국가명	㉓ 지급목적	㉔ 수혜인원	㉕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㉖ 금액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 방법

1. 기부금의 수입·지출명세

- 가. ①란은 사업연도 개시월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 (앞쪽의 ①란은 12월말 법인을 예로 든 것임)
- 나. ②란과 ③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
- 다. 합계란은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전체 수입 및 지출금액을 적습니다.

2.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 가. 국내사업 관련 ○○지원사업(장학금지급 등), 일반관리비, 기금조성비(정기예금 또는 적금 등), 기타비용(구체적인 내용 기재) 등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사업연도(과세기간) 중 매월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사람에게 유사한 금액을 지급한 비용은 "⑤ 지출월"란에 적지않고 "⑩ 사업연도(과세기간)"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 나. ⑩란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다. ⑫란 수혜인원 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지급한 실인원을 적습니다. 예시) 10명에게 10만원씩 2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수혜인원 수는 10명으로 적습니다.

※ 예시[장학금 지급: 10명에게 10만원씩 1월, 2월에 각각 지급, 복지단체 지원: A 복지단체에 2월에 1,000만원, 1회 지원(수혜인원 50명)]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1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2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2월	복지단체 지원	1	A복지단체	10,000,000
⋮	⋮	⋮	⋮	⋮
연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13년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2,000,000
	복지단체 지원	50	A복지단체	10,000,000
합 계		63		12,000,000

- 라.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합니다.
- 마. 대표 지급처명은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구분된 지출처 중 가장 큰 대표지출처를 적으며,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되, 그 지급금액과 지급내용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 가. 국외사업이 있는 단체는 국가별 지출명세를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나. ⑫란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국가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국가명,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작성 방법

1. 주식 등의 보유현황

- 가. 사업연도말 현재 해당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장부가액을 주식발행회사별로 적습니다.
- 나. 주식발행회사별 주식의 장부가액을 그 보유한 사유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
- 예) 1.10일 대한(주) 발행주식 1,000주(시가 100백만원)를 무상으로 출연받음
2.10일 대한(주) 발행주식 2,000주를 250백만원에 유상 취득
3.10일 대한(주)가 100% 무상증자를 실시해 무상주 3,000주 수령
- ⇒ 주식이액(장부가액) : 350백만원
보유경위(출연) : 100백만원, 보유경위(유상 취득) : 250백만원, 보유경위(기타) : 0원
- * 출연 : 무상으로 수증받은 경우만을 적음
 - * 유상 취득 : 출연재산, 매각대금 등을 재원으로 유상 취득하는 경우만을 적음
 - * 무상증자 등으로 단순히 주식수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지 않음
- 다. 기중에 매각한 주식으로부터 매각전에 배당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식등의 보유현황란에 적고 '비고'란에 '기중매각'으로 적습니다.

2. 보유주식 변동상황

- 가. 기중 보유주식 변동상황을 적습니다.
- 나. 무상증자(감자) 등 해당 공익법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다. 변동사유란에는 보유주식이 증감하게 된 사유를 적되, 다음 구분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1. 무상 수증 2. 유상 취득 3. 매각 4.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 5. 기타
- 라. 증가의 경우에는 (+) 금액을 적고 감소의 경우에는 (-) 금액을 적습니다.

3. 주식 등의 보유비율

- 가. 사업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4.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

- 가. 사업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3] <개정 2012.2.28>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1. 출연자(기부자)

(단위 : 원)

(1) 설립시 출연자(기부자)

성명 (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출연재산 종류	출연가액	이사장과의 관계	비고

(2) 당해 사업연도 출연자(기부자)

성명 (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출연재산 종류	출연가액	이사장과의 관계	비고

2.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성명	상임여부	출연자와의 관계	비고

작성 방법

1. 출연자(기부자)

- 이 서식의 작성대상은 설립시와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기부)한 출연자이며,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장부가액 기준)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합니다.
- 출연재산 종류에는 1. 현금 2. 금융자산 3. 토지 4. 건물(구축물 포함) 5. 주식 등 6. 기타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2.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 이사 등 주요 구성원은 이사(이사장 포함), 감사, 임원, 그 밖에 해당 공익법인의 의사결정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 방법

1. 이 서식은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에 대하여 출연받은 사업연도부터 사용이 완료되는 사업연도까지 매년 작성합니다.
2. "③ 출연받은 사업연도"란은 출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예: 2013. 1. ~ 2013. 12.)를 적습니다.
3. "④ 코드", "⑤ 종류"란은 다음 분류에 따라 적습니다.

코드	1	2	3	4	5	6	7	8	9	10
재산종류	현금	예금· 적금	토지	건물	주식· 출자지분	기계장치	의료장비	채권	차량 운반구	기타

4. "⑥ 가액"은 출연당시의 시가로 적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따른 평가가액을 적습니다.
5. "⑧, ⑩ 직접공익목적사용금액"란은 출연재산을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6. "⑨, ⑫ 수익사업사용금액"란은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7. "⑬ 미사용금액"란은 출연재산을 해당 사업연도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적습니다.
8. "⑭ 미사용사유 또는 사용계획"란은 출연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 출연재산을 이후 사업연도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 그 사용계획을 적습니다.

(예: 정관상 사용이 제한된 재산, 20xx년 전액 사용 예정)

3 외부전문가가 작성해야 할 세무확인서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신설 2012.2.28>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 인 명
③ 대 표 자 성 명	④ 전 화 번 호
⑤ 소 재 지	⑥ 사 업 목 적
⑦ 사 업 연 도	⑧ 설 립 근 거 법

1. 자산보유현황

구 분	금 액
⑨ 총 자 산 가 액	
자 산 종류별	⑩ 토 지
	⑪ 건 물
	⑫ 예·적금등 금융자산
	⑬ 주 식
	⑭ 기 타

2. 수입금액 현황

구 분	금 액
⑮ 총 수 입 금 액	
수 입 원천별	⑯ 금 융
	⑰ 부 동 산
	⑱ 기타 수익사업
	⑲ 고유목적사업

3. 세무확인결과

⑳ 위 반 금 액	㉑ 외부전문가 종합의견
-----------	--------------

4. 외부전문가의 인적사항

㉒ 구 분	㉓ 성 명	㉔ 사업자등록번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공익법인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무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무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집계표(별지 제32호서식 부표 1) 2.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 3. 수혜자 선정 부적정 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 부표 3) 4. 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 부적정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 부표 4) 5.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불이행 등 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 부표 5) 6. 보유부동산 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 부표 6) 7.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수지계산서)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부 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 부표 1] <신설 2012.2.28>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사업연도	공익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 원)	
구분	세 무 확 인 항 목		적정여부 ⑮	위반금액 ⑯
		① 합 계		
출연재산 보고 등	②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별지 제23호서식]			
	③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및 진도내역서 [별지 제24호서식]			
	④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의2서식]			
	⑤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의3서식]			
	⑥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의4서식]			
	⑦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별지 제26호서식]			
	⑧이사 등 선임명세서 [별지 제26호의2서식]			
	⑨특정기업을 위한 광고 등 명세서 [별지 제26호의3서식]			
	⑩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의 명세서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⑪수혜자 선정 부적정 명세서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3]			
	⑫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 내역 부적정 명세서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4]			
	⑬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명세서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5]			
	⑭ 보유부동산 명세서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6]			
		세무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가. ⑮란은 공익법인 제출서류의 관련 법 규정에 대한 위반 여부 등 세무확인 결과를 작성합니다.

나. ⑯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유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51조를 위반한 경우 해당 출연재산의 가액 또는 운용소득금액 및 지출비용 등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 <신설 2012.2.28>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사업연도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

(단위: 원, m²)

사 용 수 익 재 산						사 용 수 익 의 귀 속 자				⑩ 정상 대가	⑪ 사용 대가	⑫ 사용 수익금액 (⑩-⑪)	⑬ 비고
① 재산 종류	② 출연 (취득) 일 자	③ 출연 자	④ 소 재 지	⑤ 수 량 (면 적)	⑥ 가 액	⑦ 성 명	⑧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⑨ 출연자 등과의 관계					
합 계													

364mm×25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4] <신설 2012.2.28>

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사업 연도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	--	-----	--	-------------	--

(단위 : 원, m²)

출 연 재 산				운 용 현 황					⑩ 적 요
① 재산 종류	② 소 재 지	③ 수량 (면적)	④ 출연재산가액	⑤ 구 분	⑥ 수익 금액	⑦ 적정수익금액	오류 및 탈루금액		
							⑧ 유형	⑨ 금액	
합	계								

364mm×257mm[백상지 80g/m²또는 중질지 80g/m²]

부 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5] <신설 2012.2.28>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사업연도		공익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1.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내역

구 분	①	②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및 출연재산금액	③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장부 등	④ 비 고
공익목적 사 업				
수 익 사 업 명				

2. 출연재산 명세 보고 등 불이행 내역

구 분	⑤	⑥ 제 출 여 부	⑦ 미제출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	⑧ 누락 또는 오류 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별지 제23호서식]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 도내역서 [별지 제24호서식]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의2서식]				
재산매각대금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의3서식]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의4서식]				
주식(출자지분)보유 명세서 [별지 제26호서식]				
이사 등 선임명세서 [별지 제26호의2서식]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별지 제26호의3서식]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6] <신설 2012.2.28>

보 유 부 동 산 명 세 서

사업연도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재산 종류	출연일자 (취득일자)	소 재 지	수 량 (면적)	장부가액	재산 종류	출연일자 (취득일자)	소 재 지	수 량 (면적)	장부가액	재산 종류	출연일자 (취득일자)	소 재 지	수 량 (면적)	장부가액	
					합						계				

364mm×25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